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583
----------	-------

발의연월일 : 2026. 8. 14.

발 의 자 : 박상혁 · 허 영 · 문진석
김주영 · 박균택 · 이해식
김영환 · 박정현 · 강준현
박홍배 · 한준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피해자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범죄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국가기관이 가해자에 대한 수사·재판 결과, 형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톱킹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성에 기인하는 특성상 피해자의 거주지나 신상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보복범죄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가해자의 형사절차 관련 정보가 피해자의 요청시에만 통지되는 현행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스톱킹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가해자의 형사절차 정보를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스톱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2. 공판의 일시·장소
 3. 재판 결과
 4. 스톱킹행위자의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5. 그 밖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1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①</u> <u>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1.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u> <u>2. 공판의 일시 · 장소</u> <u>3. 재판 결과</u> <u>4. 스토킹 행위자의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u> <u>5. 그 밖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u>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내용 ·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